

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13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

2. 개정이유

- 민선8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들고, 소통홍보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시장 직속 소통홍보관을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명시 (안 제3조제2항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3년 1월 23일까지(1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 · 우편 · 팩스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 · 주소 · 생년월일 · 연락처 · 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행정지원과 인사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파주시청 행정지원과(우 10932)

○ 전화 : 031)940-4123 / Fax 031)940-4109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